

의안번호	2220963
의 퇴 인	차규근의원
회 답 일	2026. 10. 7.
추 계 번호	26B449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및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보고서 작성 및 성과지표 개발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6억 7,400만원(연평균 1억 3,48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안 제10조의2)	8	8	8	8	8	40	8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안 제10조의4)	4.8	4.8	4.8	4.8	4.8	24	4.8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의5)	24	24	24	24	24	120	24
국회 보고 의무 (안 제10조의9)	88	88	88	88	88	440	88
성과평가 체계 (안 제10조의10)	50	—	—	—	—	50	10
추가재정소요	174.8	124.8	124.8	124.8	124.8	674	134.8

주: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별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과 연간보고서 작성 및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수행 여부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신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재량규정

		5.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6.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8.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9.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10.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 12.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 1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7항)	의무규정
2	안 제10조의4(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신설	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의 목적 및 용처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의무규정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차관, 제10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2.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2명	의무규정

		3. 주거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거복지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도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도시 분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주택도시기금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3	안 제10조의5(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주택도시기금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이하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이하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라 한다)	의무규정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의9(국회 보고 의무) 신설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1. 기금 운용의 세부 성과 및 결과 분석 2. 주요 사업별 성과 및 국민 주거안정 기여도 3. 재무적 운용의 적절성 평가 4.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분석 5. 차년도 운용계획 및 중장기 전망 6. 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활동 결과	의무규정
5	안 10조의10(성과평가 체계) 신설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제1항) 1. 기금대출을 통한 주거안정 성과지표 가. 입주가구의 주택면적 변화 나. 출퇴근 시간 변화 다. 주거비 부담 변화 2. 지역별 주거수준 변화지표 가. 주택도시기금의 시·도별 집행 실적 나.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중 다. 기금사용에 따른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3. 기금 지원 주택의 품질 확보 지표 가. 하자발생 빈도 나. 입주자 만족도 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금지원 단가의 적정성	의무규정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6	안 제10조의 11(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금 운용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의2(주택도시기금 운용위원회)	○	·국토교통부 의견 및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10조의4(주택도시기금 평가위원회)		
3	안 제10조의5(주택도시기금 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안 제10조의9(국회 보고 의무)		
5	안 10조의10(성과평가 체계)		
6	안 제10조의 11(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	·미첨부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기금 운용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각화 자료의 작성·제공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식 및 시각화 자료의 작성·제공 범위와 수준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점에서는 해당 사항을 예측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의2)

-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회의 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위원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위원 수) 개정안에서는 운용위원회의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참석 사례금 지급 대상인 위촉위원의 정원은 최대 10명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위촉위원을 최대인원인 10명으로 가정함
- (회의개최 횟수) 개정안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회의참석 사례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의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최소 개최 횟수인 4회로 가정함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참석수당 20만원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운용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000만원(연평균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	8	8	8	8	40	8

주: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국토교통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의4)

- 개정안은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위원 수 등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위원 수) 개정안에서는 운용위원회의 정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참석 사례금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의 정원은 주거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 등 총 6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을 6인으로 전제함
- (회의개최 횟수) 개정안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금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심의·평가 사항 등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운용위원회의 연간 최소 회의 개최 횟수인 4회를 준용함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참석수당 20만원²⁾)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800만원(연평균 480만원)으로 추계 됨

[표 3]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6	6	6	6	6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4.8	4.8	4.8	4.8	4.8	24	4.8

주: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국토교통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의5)

- 개정안은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서는 전문위원회 산하에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 및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각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위원 수 등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위원 수) 개정안에서는 각 전문위원회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각 전문위원회의 최대 정원인 15인으로 가정함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 (회의개최 횟수) 개정안에서는 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금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심의·검토 사항 등에 따라 회의 개최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운용위원회의 연간 최소 회의 개최 횟수인 4회를 준용함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참석수당 20만원³⁾)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2,000만원(연평균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 2028~2032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평균
민간위원 수(A, 명)	30	30	30	30	30	—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24	24	24	24	24	120	24

주: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국토교통부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간보고서 작성 (안 제10조의9)

- 개정안에 따라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적절성 평가 등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할 경우, 연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용역’에 8,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주택도시기금 연간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표 5] 연간보고서 작성 관련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계약 금액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용역	(주) 시엔피컨설팅	88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신보 ESG경영 수준 진단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를 통한 핵심 이슈 발굴 ·보고서 작성 및 탄소배출량 공시

자료: 신용보증기금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용역을 통해 연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억 4,000만원(연평균 8,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연간보고서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연간보고서 작성(안 제10조의9)	88	88	88	88	88	440	88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성과지표 개발 (안 제10조의10)

- 개정안에 따라 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녹색자금 지원사업 복권기금 성과평가 지표 개발’ 용역에 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주택도시기금 운용 효과성 및 효율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7] 성과지표 개발 관련 유사사례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계약 금액	주요내용
녹색자금 지원사업 복권기금 성과평가 지표 개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50	·기존 성과지표 및 사업의 성과창출 프로세스 정리 ·유사사업 성과지표 조사 및 분석 ·성과지표 POOL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중복성 검토 ·최종 대표지표 후보군 도출 및 제언 - (단기) 2026년 성과평가 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중기) 중장기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지표군 및 목표치 설정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해인 2028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용역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5,0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성과지표 개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성과지표 개발(안 제10조의10)	50	-	-	-	-	50	10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가재정소요액은 국토교통부의 의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별 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과 연간보고서 작성 및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수행 여부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